

# 예산총칙

2020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031,618,573	30,948,557
일반회계	896,855,155	26,905,655
특별회계	134,763,418	4,042,903
공기업특별회계	112,103,525	3,363,106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3,550,781	1,006,523
하수도사업특별회계	78,552,744	2,356,582
기타특별회계	22,659,893	679,797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989,438	59,683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4,403,535	132,106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516,545	15,496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10,761,526	322,846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3,894,962	116,849
지하수특별회계	1,093,887	32,81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,085,249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